

'21학년도 2학기 코로나-19 관련 휴학 업무처리 방안

<2021. 8. 24.(화) / 교육혁신처>

코로나-19 확진자, 외국인 신입생, 해외체류 재학생이 코로나-19로 인해 2021학년도 2학기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의 휴학 업무 처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각 대학(원)에 안내하고자 함

I. 대상자별 휴학 종류

○ 코로나-19 확진자 : 질병휴학

- (제출서류) 진단서, 감염증 확인증 등 증빙자료

○ 코로나-19 관련 국내 입국 불희망자 : 일반휴학

- (신청기한) '21. 10. 12.(화)까지
- (제출서류) 사유서

※ 국내 입국 불희망에 따른 신입생 첫째학기 휴학자는 추후 입국 시에도 '21학년도 2학기 휴학 취소 불가

○ 코로나-19 관련 국내 입국 불가능자 : 일반휴학

- (신청기한) '21. 10. 12.(화)까지
- (제출서류) 입국 불가능에 대한 증빙자료

※ 비자 발급 거부, 항공기 운행 중단 등 입국 불가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

○ 코로나-19 관련 국내 입국 지연자 : 일반휴학

- (신청기한) '21. 10. 29.(금)까지
- (제출서류) 입국 지연에 대한 증빙자료

※ 비자 발급 거부, 항공기 운행 중단 등 입국 지연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

II. 학칙 관련

- 코로나-19 관련 일반휴학은 학칙 제6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신입생도 첫째 학기 휴학이 가능하며, 추후 통산 휴학기간이 초과될 때 해당 학기는 휴학기간에 가산하지 않음